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11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1133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62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철우

2. C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6235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말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이체를 하면,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8. 12. 11. E에서 대출받은 돈인 3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G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 C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결국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G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되었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돈이 피고 회사의 G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이나 피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바로 위 돈 상당의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과 관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C과의 G 가상화폐 거래 약정에 따라 이더리움의 대금으로서 위 돈을 수령한 것이고, 위 이더리움도 결국 피고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에게 귀속되었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였고, 피고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바, 피고들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였고 원고의 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C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단지 직장 상사인 H의 지시에 따라 '1.기초사실'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